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467
----------	------

제안일자 : 2021. 6. 22  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신설하려는 조문의 위치를 통합심의위원회 ‘회의소집 및 운영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3조제3항으로 변경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20조제7항을 삭제하고,
- 안 제23조제3항에 지역구 시의원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수정함.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0조제7항을 삭제한다.

안 제23조제3항 중 “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”를 “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0조(통합심의회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20조(통합심의회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위원장은 통합심의회 위원회 개최 시 사업 대상지 지역구 시의원의 참석을 허용할 수 있고, 필요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0조(통합심의회위원회)의 구성 및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〈삭 제〉</p>
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통합심의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	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 <u>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</u> ----- -----.</p>
<p>④ ~ ⑦ (생략)</p>	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”를 “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</u>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 <p>④ ~ ⑦ (생략)</p>	<p>제23조(회의소집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관계공무원·관계전문가 또는 지역구 시의원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